WEEKLY IBK 경제브리프
(656호) 2019-08-08
IBK경제연구소

글로벌 무역전쟁 시리즈 # 7

8월 7일 日수출무역관리령 개정에 대한 이해

백색국가에서 제외했지만, 추가 규제 품목은 없음
단, 한국에 대한 추가 규제는 언제든지 가능

□ 8.7일 일본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것을 공표(시행 8.28일)

□ 한국은 백색국가에서는 제외되었지만 다른 비(非)백색국가보다는 상위 그룹에 분류함

○ 수출무역관리령(이하 수출령)을 일부 개정하며 백색국가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며, **새로운 [국가 범주]에서 한국은 그룹 B**에 속함

< 새롭게 개정된 국가 범주 >

명칭	요건	해당국가
그룹 A	한국을 뺀 기존 백색국가 (수출령 별표3 국가)	미국, 영국, 독일 등 26개국
그룹 B	수출관리체제*에 참가하고,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(그룹 A제외)	**한국**, 발트 3국(에스토니아, 라트비아, 리투아니아) 등 16개국(추정)
그룹 C	그룹 A, B, D를 제외한 모든 국가	중국 등 다수 국가
그룹 D	무기수출금지국(수출령 별표3-2), 우려국(수출령 별표 4지역)	아프가니스탄, 중앙아프리카 공화국, 콩고민주공화국, 이라크, 이란, 레바논, 리비아, 북한, 소말리아, 수단 등 10개국

*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: ①바세나르체제, ②핵공급그룹, ③미사일기술통제체제, ④오스트레일리아그룹

□ 그룹 A(백색국가)에서 제외되면 무엇이 달라지나?

○ 일본의 수출규제는 ①목록규제(전략물자 15개 항목*, 약 1,700여개 물자), ②캐치올 규제, ③환적화물 규제, ④중개무역 규제 등이 있는데,

* ①무기 ②원자력 ③화학무기 ④미사일 ⑤첨단소재 ⑥소재가공 ⑦전자제품 ⑧전자계산기 ⑨통신 ⑩센서 ⑪항법장치 ⑫해양관련 ⑬추진장치 ⑭기타 ⑮민감품목

○ 그룹 A(백색국가)는 ②~④ 규제 적용이 면제되지만,

○ 한국이 그룹 B로 강등되며 캐치올 물품(비전략물자 49개 품목)의 수출, 환적화물(일본 경유 화물), 중개무역 등에 대해 **대량 살상무기의 개발·제조·사용·저장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,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함**

□ 그룹 A(백색국가)에서 제외되었는데 규제 품목은 왜 동일한가?

○ ①전략물자(1~15항)는 개별 품목에 따라 포괄허가 허용 여부가 달라지는데, 이는 [국가 범주]와 [최종 목적지(仕向国)]에 의해 결정됨

○ 지금 한국이 속한 범주는 [국가 범주 : 그룹 B], [최종 목적지 : り(리)지역]에 속함

- 7월 4일 일본은 한국을 백색국가가 속해 있던 い(이)지역①에서 り(리)지역으로 변경한 바 있음 ※ り(리)지역은 7.4일 신설한 지역으로 **한국 1개국만 해당**

< 국가 범주와 최종 목적지에 따른 수출국 분류 >



○ 우선 **포괄허가의 종류는 [국가 범주]에 따라 다른데**, 그룹 D 국가에 대한 수출은 개별허가만 가능해 수출건마다 심사를 받아야함

< 일본의 포괄수출 허가 개요 >

일반포괄허가 **(그룹 A 전용)**	**민감도가 낮은 품목**에 대해 **A국가에 한하여** 특정 **최종목적지·품목**에 대한 수출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제도
특별일반포괄허가	**민감도가 낮은 품목**에 대해 **B~C국가에 대해** 특정 **최종목적지·품목**에 대한 수출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제도
특정포괄허가	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**특정 기업에 대해** 수출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제도 ※ A~C국가 신청가능

○ 그룹 B에 속한 한국은 **'특별일반포괄허가'**를 받을 수 있음

- '특별일반포괄허가'는 **기업내부자율관리준수(ICP) 보유** 등 '일반포괄허가'보다 **수출자의 요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지지만,**
- 일단 수출자가 허가를 받고 나면 **허가 유효기간은 3년으로 동일**

○ **개별 품목에 대한 규제는 [최종 목적지]에 따라 달라지는데,** 한국이 속한 り(리)**지역은 종전과 포괄허가 범위가 동일**

① 종전 일반포괄허가* → **특별일반포괄허가**

* 3개품목(플루오린 폴리이미드, 포토레지스트, 에칭가스)을 제외하면 그룹 A(백색국가)가 포괄허가를 받고 있는 품목들에 대해 동일하게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음

② 종전 특정포괄허가 → **특정포괄허가** (예) 무기류(총기) 등 민감제품

③ 종전 개별허가 → 개별허가 (예) 핵연료물질 성형 가공용 장치 등 초민감제품

□ **표면적으로 한국은 그룹 C에 속한 국가들보다 수출 규제 수준이 낮은 편**

○ 중국, 대만, 싱가포르, 베트남 등 그룹 C에 속한 국가들의 [최종 목적지]는 ろ(로)지역~と(도)지역에 속하는데,

○ 그룹 A와 한국은 '포괄허가'를 받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, 그룹 C가 속한 ろ(로)지역~と(도)지역은 비교적 절차가 엄격한 '특정포괄허가'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

□ **그러나, 한국을 り(리)지역에 홀로 떨어뜨려 놓음으로서 향후 한국만을 겨냥한 추가적인 보복 행위는 얼마든지 가능**

○ 7월 4일 3개 품목의 り(리)지역(한국)에 대한 수출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한 것처럼 **추후에도 얼마든지 규제 품목을 확대할 수 있음**

□ **따라서 현재 일본정부의 발표내용에 안주하지 말고, 추가적인 무역 규제에 대비하고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**

(작성자 : 산업연구팀 차장 장우애 wooae78@ibk.co.kr / ☎02-729-6811)